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조례안

(김 현 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31
----------	---------

발의연월일: 2020년 4월 일

발 의 자: 김현희, 박성호, 송순효, 정정희  
박주선, 송영섭, 강선영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전 지구적인 문제로서 기후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 및 적응 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적응 활동을 통해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의 기본이념을 규정함. (안 제3조)

라.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마. 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바.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사. 기후변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 아. 민간 거버넌스 활동 지원을 규정함.(안 제11조)
- 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
- 차.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3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 3)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협조부서: 녹색환경과

다. 입법예고: 2020. 4. 14. ~ 2020. 4. 19.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 및 적응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구온난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농도 증가 지표 및 대기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변화”란 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4.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경제·사회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 또는 누출하는 것을 말한다.
5.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6.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이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과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의 기본이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시책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2.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제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예방, 환경보전,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을 꾀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정부 및 서울특별시장의 기후변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시책 추진 및 구민의 활동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수립·시행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사회적 기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3.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계획
  4.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5.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구민참여 확대를 위한 실천대책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7. 기후변화영향 조사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위원회) ① 구청장은 구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대한 자문 및 정책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
2.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
3.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관련 교육·홍보와 관련된 사항
4. 정부기관, 지방자치 단체 등과의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환경 대책 및 기후 변화 대책의 효율적인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에 의해 구성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가 제1항의 위원회를 겸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증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관련지식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 거버넌스 활동 지원)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기후 변화 대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시책 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기금(이하 “기후변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호에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위원회 안건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